

 신안산대학교	<b>학생자치 회칙</b>	규정번호 2-5-10 제정일자 1995. 3. 14. 개정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를 신안산대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 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과 최상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자율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신안산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회원)

- ①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본 대학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 ② 본 회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한자는 본 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③ 학칙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은 자는 그 징벌만료 일까지 본 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④ 탄핵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위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본 회 회칙의 영향을 받는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6조(구성)

-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전체학생회(각과 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를 둔다.
- ② 회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체학생회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나 전체 재적학생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회원들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3. 설치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4. 설치에 따른 의무가 따라야 한다.
- ③ 본 회의 임원은 학적유지 기간이 2학기 또는 그 이상의 잔여기간을 유지하고 등록을 필해야 하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로 선출한다.
- ④ 위③의 해석 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학과장의 요청으로 학생지도위원의 심의로 승인한다.

### 제7조(학교당국과의 관계)

- ① 본 회는 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 협의 할 수 있다.

1.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창업·취업에 관한 사항.
  2. 등록금·교수·조교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자치회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3. 기타 학교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본 대학 및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한 당사자의 징계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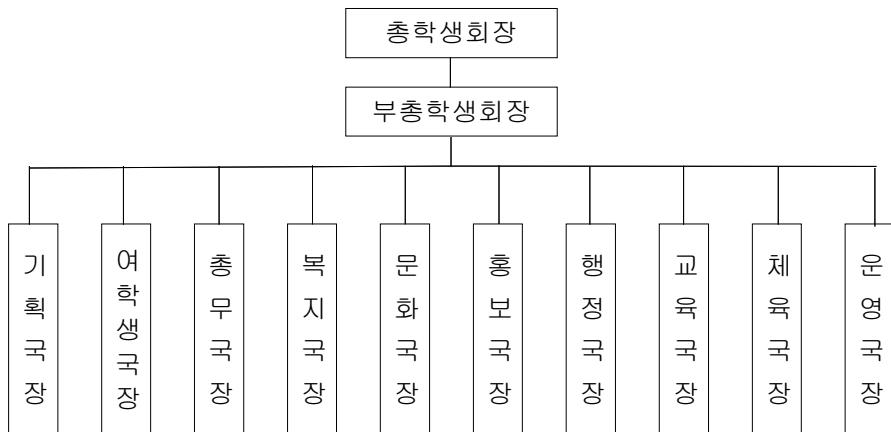
## 제 2 장 총 학 生 회

**제8조(지위)** 본 회의 최고 심의·의결·집행기구이다.

**제9조(구성)**

- ①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당선 후 1개월 내에 각 학과 학회장 중에서 부총학생회장 및 각 국장을 구성한다.

② 조직도



**제10조(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지위 및 업무범위)**

① 총학생회장

1. 본 회를 대표하고 학생자치기구의 대표 또는 의장(회장)이 된다.
2. 본 회의 결정사항을 공고한다.
3.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학생회 임원을 선출·해임한다.
4. 학교기관의 정식단체가 아니거나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있거나 구성원의 갈등을 유발하는 학내부착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제거를 할 수 있다.

② 부총학생회장

1. 총학생회장을 보좌한다.
2. 총학생회장 궐위(탄핵) 또는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각 국 구성원의 지위 및 업무범위)**

① 기획국장

1. 본 회의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2.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해당국장에게 실천업무를 이임하고 협조한다.

② 여학생국장

1. 본 회 여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활동한다.

2. 여학생들의 권리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③ 총무국장

1. 본 회의 일반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2. 예산의 집행은 감사위원의 승인을 필하고 승인결정이 연장되는 경우 전년도 대비 105%범위 이내에서 총학생회장의 지시를 받고 집행 할 수 있다.

④ 복지국장

1. 총학생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회원들의 복지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2. 총학생회장 공약사항 중 복지에 관한 업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본 대학의 시설물에 대해 본 회 회원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문화국장

1. 본 회 회원들의 문화, 예술, 학술, 교양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본 대학 내 동아리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해 해당 동아리 회장에게 보고를 받는다.

⑥ 홍보국장

1.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2. 본 회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집행기구 및 자치단체에게 홍보를 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단, 학생자치회칙 및 회칙의 제반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전체학생회에 상정한다.

⑦ 행정국장

1. 본 회의 모든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2. 각 부서활동에 대한 행정(문서 등)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⑧ 교육국장

1. 창업 · 취업 · 편입학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취업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협조를 하여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학생자치기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학내외의 광고 및 부착물의 승인 거절 및 지도를 한다.

⑨ 체육국장

1. 본 회의 체육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본 회 회원들이 학내행사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등하고 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한다.
3. 본 회 회원(또는 대학의 특정단체)이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운영국장

1. 운영국장은 학회장 또는 비학회장 중 총학생회장이 필요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12조(구성)** 전체 학과 학회장으로 구성된다.

**제13조(업무권한 및 의무)**

- ① 본 회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최종 승인 받는다.
- ② 학회비( 징수 · 결정 · 집행 · 관리 등)는 원칙적으로 학회장이 관리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체학생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그 이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전체학생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공식적인 행사에 상습적으로 미 참석시 전체학생회를 통하여 제명한다.
- ⑤ 특별히 참여인원수가 지정된 사항 이외에 전체학생회 구성 2/3이상의 합의에 의해 본 회에 필요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단, 전체학생회의 3/4의 요구와 참여인원 2/3의 승인에 의해 위 의결을 부인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내용 및 자격)**

- ① 총학생회장이 전체학생회의 의장으로 한다.
- ② 회칙개정안을 심의 · 의결한다.
- ③ 본 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임시)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
- ④ 학생자치 문화 · 복지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⑥ 본 회 회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전체회원의 이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⑦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제15조(소집)** 아래와 같은 경우 전체학생회를 소집한다.

- ① 총학생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전체회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감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6조(결정)**

- ① 특별히 참여인원수가 지정된 사항 이외에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 회의 개최시간 및 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48시간 이전에 전체학생회에 통보하고 전체학생회의 구성원 2/3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전체회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4 장 학 과 학 생 회

**제17조(구성과 업무범위)**

- ① 각 학과 학회장은 해당학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선거권 규정은 본칙 제 9장 제 41조와 같고 해당학과의 특성을 감안한 해당 학과 학생회임원(부회장 · 각 부장 등)을 선출(지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찬성 · 반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② 각 학과 학회장은 재임 또는 역임 할 수 없다.
- ③ 정원 외 입학생 및 산업체 위탁생은 학회장직을 할 수 없다.

④ 각 학과는 해당학과 학회장이 해당학과의 필요에 의해 해당학과의 자율에 의한 학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각 학과 학회장은 필요에 의해 학회비의 징수·관리·사용에 대한 결정·집행에 대해 해당학과의 임원을 지정하여 일부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의 위임범위는 해당사항에 국한한다.

## 제 5 장 감 사 위 원

### 제18조 (감사위원의 구성 및 위임)

① 총학생회 임원이 아닌 각 학과 학회장 중 4인을 자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감사위원 선출은 총학생회 구성 후 2주안에 구성한다.

③ 자체호선 되어 선출 된 감사위원은 학생지도위원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 제19조 (권한 및 의무)

① 학생자치기구 전체의 경제적 지출비용에 대한 감사기구이다.

② 각 학과 대표(학회장)를 소집하여 자치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실시한 후 이를 7일 이내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20조(탄핵)

① 전체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장, 각과 학회장에 대하여 탄핵 할 수 있다.

② 탄핵의 상정은 전체 학생회 구성원 중에서 할 수 있으며 탄핵 심의는 탄핵 대상자를 제외한 전체 학생회의  $\frac{3}{4}$  이상 참석 후  $\frac{2}{3}$  이상 찬성하여 탄핵한다.

③ 탄핵의 사유는 각 학생자치 활동 중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학생자치 활동의 의무를 거부 또는 고의로 태만할 경우, 기타 학교 및 자치기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로 한다.

④ 탄핵의 심의·의결권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 승인으로 탄핵이 확정되며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 제 6 장 졸 업 준 비 위 원 회

제21조(설치 및 해산) 졸업예정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설치하고 목적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 제22조(위원의 구성)

① 졸업준비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집행부 5인, 감사위원 4인으로 구성(전체9인)한다.

③ 졸업준비위원회의 소집은 소집 3일 이전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한다.

### 제23조(업무범위)

① 졸업앨범 및 졸업선물, 학교 기증품에 관한 사항

②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는 졸업과 관련한 일체의 계약 건

### 제24조(졸업관련물품 견적의 방법)

① 동일한 물품(건)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견적을 받고(일정한 장소 · 일정한 일시에 대조를 한다.)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한 업체와 계약한다.

② 같은 종류의 물품일지라도 인적기술이 소요되는 물품(앨범 등)을 선택하는 경우 과거의 경험과 기술력 등을 감안하고 여러 물품의 중간 값의 범위에서 10%이상을 초과하지 않거나 전년대비 105%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고의 제품을 선택한다. 단, 위원회에서는 견적과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과 물품 값을 인하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견적자를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처할 수 없다.

#### 제25조(졸업관련 물품 결정의 방법)

① 졸업준비위원회의 다수결로 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졸업준비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따르되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 장 동 아 리

제26조(구성) 본 회에 등록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 제27조(회장 · 부회장)

① 각 동아리는 자치적으로 해당 동아리 회원끼리 임원(회장 · 부회장 등)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해당 동아리를 대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궐위) 시 또는 탄핵 시 권한을 대행한다.

#### 제28조(업무권한 및 의무)

① 각 동아리들은 자아개발 및 정신함양과 대학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

② 본 대학 내 동아리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해 총학생회에 통보하여 협의를 거쳐 시설물을 이용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동아리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입학학생처장의 승인을 요한다. <개정 2023.3.30., 2024.3.20.>

③ 각 동아리의 부득이한 경제적 사정으로 본 회 회비의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동아리 회장은 총학생회의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총학생회에서 심의하고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④ 대학 및 각 자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⑤ 본 회 회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 제 8 장 재 정

제2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비로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신임 총학생회장 당선 년도 12월 1일 ~ 익년 11월 30일 까지로 하며, 학기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집행한다.

#### 제31조(회비)

① 전년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② 전년도 대비 5%범위 이내의 인상을 하는 경우 전체학생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
- ③ 전년도 대비 5%범위 이상을 인상하는 경우 전체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해 필요 한 비용을 학생처장의 승인아래 본 회비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본 회의 회비는 매 학년 초 등록금 납입 때 함께 납부한다.
- ⑤ 본 회의 회비지출에 대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⑥ 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해당 자치기구가 회비를 인출하고자 하는 때 총학생회장(또는 권한대행)의 결재를 요한다.

### 제32조(예산)

- ① 총학생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비용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 ② 각 자치기구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해지 되는 다음 날)이전까지 예산안을 작성(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그 사유가 소멸 후 7일 이내)하여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
- ③ 예산안이 소정기일(7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학생회의 승인을 얻고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④ 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이 필요한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또는 전체 학생회의 승인을 필하고 집행하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 제33조(결산 및 감사)

- ① 행사완료 10일내에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요청하고, 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편취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자진 사임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 9 장 총 학 生 회 장 선 거

###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와 구성과 직무)

-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총학생회장(또는 권한대행)이 되며, 총학생회장이 지명하는 6인, 감사위원 4인으로 구성(11인)한다.

### 제35조 (선거에 관한 공고·선거일시·장소 및 입후보자 등록원서 교부 등에 관한사항)

- ① 기타방법 (현 학회장을 통한 공고 등)
- ② 기호배정은 원서접수 순서로 한다.

###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 ① 선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11명중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입후보자 적격여부 심의 및 결정
- ③ 당선취소 및 재제의 결정
- ④ 선거와 관련하여 결정이 지극히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에 해당문제를 회부하여 그 결정을 통보 받는다.

### 제37조(투표절차)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체 학생회(학회장)회원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결정하고 전체학과(부) 차기 학회장 2/3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단독후보자인 경우 찬성·반대 투표로 결정한다.

#### 제38조(투개표 시 선거관리위원회 인원)

- ① 위원회 의장 1인
- ② 위원회 부의장 1인
- ③ 간사 1인
- ④ 위원 2인
- ⑤ 투개표 위원 2인

제39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 중 각 학과 학회장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 제40조(피선거권)

① 학칙 및 학생자치회칙을 준수하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로 각 학과 학회장 중 등록원서를 제출한 자.

② 재학기간이 2학기 또는 그 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학년인 경우 80학점을 기준으로 최소 15학점 이상을(3학년인 경우는 120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①,②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제41조(입후보자 서명)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선거규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확인하고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입후보자 등록)

① 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처에 비치된 입후보등록원서를 교부받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날짜 이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되면 그 즉시 입후보 등록 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구비서류

1. 등록원서
2. 성적증명서 사본 1부
3. 후보자 소견서

③ 기호추첨은 입후보 순서로 한다.

#### 제43조(피선거권의 박탈)

①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이 계속중인 자

② 학생자치회칙을 위반하여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자

③ 등록금 또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제44조(선거)

① 전체 학생회(각과 학회장)에 의해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② 선거일은 당해연도 11월 중 대학내에서 한다. 단, 학사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권고로 변경 할 수 있다.

③ 재선거 사유가 발생하여 재선거를 할 경우 사유발생 후 2주내 실시한다.

④ 단, 위 기간 중 총학생회장을 선출 하지 못 할 경우 이후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위임하여 총학생회 출범에 대하여 지도 받는다.

#### 제45조(보궐선거 및 재선거)

① 탄핵의 결의가 있는 때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최단 시일 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탄핵되어지거나 당선 취소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 ③ 당사자가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를 선거관리지도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 후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절차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으로 한다.
- ④ 2학기이후 사유발생 시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보궐선거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6조(선거운동)

- ① 등록원서를 교부받은 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비용과 제한
  - 1.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며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2. 위1.의 비용은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비용은 5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7조(당선인)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학업성적순으로 하며 이 또한 동일하면 연장자 순으로 적용한다.
- ③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성 · 반대 투표를 거친다.

#### 제48조(당선취소)

- ①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 ② 사용자 또는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 또는 방조한 자.
- ③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타 후보 및 선거권자를 방해한 자.
- ④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자.
- ⑤ 선거와 관련 금품, 향응, 음식물의 제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자.
- ⑥ 기타 총학생회 선거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자.

#### 제49조(이의신청)

-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고 학생지도위원회는 선거가 종료한 다음 주 월요일 이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고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결과를 취소하거나 승인하여야 한다.

#### 제50조(투표 및 개표)

- ①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관련 종사(업무)자, 투표자 이외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 ② 무효표도 투표행위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무효표로 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나 검인용지가 아닌 경우
  - 2. 규정이외의 방법으로 표식하거나 기입표식이 분명 치 않은 경우

## 제 10 장 회 칙 개 정

**제51조(발의)** 본 회의 회칙개정은 본 회 회원 1/20이상의 요구나 총학생회장, 감사위원의 제안으로 발의 된다

**제52조(의결)** 발의된 회칙은 전체학생회 4/5의 출석과 출석인원 3/4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3조(결정)** 의결된 회칙은 학생지도위원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제54조(공고)** 회칙개정이 결정되면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고 또는 공표한다.

### 제55조(효력)

- ① 개정된 회칙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 ② 본 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